

'압송 중 또 도주' 경찰 피의자 관리 도마 위

광주 동부서에서 우즈벡 절도범 도주...풀어준 수갑이 화근 마약사범 놓치고 베트남인 집단 탈주...2년새 5번째 도주극 "인권 등 고려 필수...현장 판단 아닌 '지침의 세부화' 필요"

광주에서 또 다시 압송 도중 피의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의 피의자 부실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부분 피의자 인권을 감안해 수갑을 풀어준 것이 화근으로, 수갑사용에 대한 지침을 보다 세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9일 절도 행각을 벌이다 붙잡힌 뒤 경찰을 때리고 도망간 혐의(절도·도주·공무집행방해)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A(1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5분께 동부경찰서 앞마당에서 압송되던 중 자신을 데려온 지역 지구대원 B경사를 때린 뒤 달아난 혐의다.

A씨는 앞서 이날 오후 5시59분께 동구 충장로 한 접화점에서 2만8000원 상당의 이동식 디스크(USB) 등을 훔치다 업무에게 적발돼 현행범으로 경찰에 넘겨졌다. 달아난 A씨는 도주 3시간 15분 만인 오후 9시 20분께 동구 한 대학교 기숙사 건물에서 긴급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9월 지역 한 대학교에서의 어학연수를 위해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도주는 경찰의 허술했던 피의자 관리가 화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주 직전 A씨에게는 수갑 등 최소한의 도주 방지책이 채워지지 않았었다. 검거 당시 경찰은 업무로부터 A씨를 인계받은 직후 접화점 매장에서 수갑을 채웠으나 이후 경찰차 안에서 풀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탓에 A씨는 경찰서 도착 직후 자신을 압송하려는 지구대원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달아날 수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의 피의자 도주 방지책 부재는 잇단 탈주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역 피의자들의 도주극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2년 사이 5건에 이른다.

실제 지난 9월 광주 북구 한 주택가에서는 숙박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20대 C씨가 경찰과 함께 주변 지구대로 임의동행하던 과정에서 달아나 2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지난 6월에는 광산구 월곡지구대에서 도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베트남인 10명이 지구대 창문을 통해 집단으로 탈주하는 사건이 발생, 35시간 만에 모두 검거됐다.

또 지난해 7월 광산구 하남파출소에서는 데이트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조사를 받던 중 휴식시간을 틈타 파출소 담을 넘어 달아났다가 7시간 만에 잡혔고, 이보다 6개월 앞선 1월에는 광주 북부경찰이 수갑을 채운 피의자를 병원에서 놓치기도 했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요구에 수갑을 풀어주자 그대로 달아난 것이다.

전날까지 이어진 사건 모두 경찰이 피의자 관리에 소홀하면서 발생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장에서는 수갑과 같은 도주 방지책이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피의자 도주 사건이 잇따른다고 설명한다. 수갑은 폭행·도주·극단적 선택 시도 등의 우려가 보이는 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현장의 설명이다.

범죄수사규칙 제125조 4항에서도 '경찰관은 피의자가 도주, 자살 또는 폭행 등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갑·포승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쓰여 있다. 구속된 유치인을 다루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2조에도 수갑의 사용 범위를 출감·도주·극단적 선택·폭행 우려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은 A씨가 유치인이 아니고 압송에 순순히 응했다는 점 등에서 수갑 사용이 제한적인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갑사용이 인권 등 이유로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피의자 도주로 인한 추가 범행과 시민 불안을 막기 위해서는 현장의 판단이 아닌 지침의 세부화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김희면기자



광주 동부소방, 전문기관 합동 '비상용 승강기 특별교육·훈련'

광주 동부 소방서(서장 송민영)는 최근 세종요양병원 및 한국마사회에서 현장지휘·화재진압 대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광주지사와 연계한 비상용 승강기 조작 교육·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여수해경, 소형 경비정 등 릴레이 소통 간담회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동절기 자체 사고 예방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고민관 여수해양경찰서장이 소형 경비정과 방제함을 방문하며 소통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기동취재본부



광양경찰,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전개

광양경찰서(서장 최병운)는 지난 16일 중앙동 미관광장, 중동근린공원 일대에서 수험생 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민·警·學 합동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펼쳤다. 광양=기동취재본부



순천경찰, 보이스피싱 범인 검거에 기여한 택시기사 감사장 수여

순천경찰서(서장 김남희)는 최근 서장실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인 검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택시기사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 보상을 전달했다. 순천=김승호기자



고흥경찰, 수능 종료 후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전개

고흥경찰서(서장 허양선)는 지난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음주·흡연 등 탈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선도·보호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고흥=기동취재본부



담양소방, 민간전문가 참여 합동 화재안전조사

담양소방서는(서장 윤예심)는 지난 17일 관내 중점관리대상에 대해 민간전문가 참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직장인 절반은 '주 48시간' 적정... "국제 기준 따라야"

직장인 1000명 설문... '주 48시간' 48.3% 정부는 주 60시간 추진... "오히려 줄여야"

"일손 부족으로 특근을 거의 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특근비가 나오지만, 몸이 못 버텨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받은 이메일 중)

정부가 최근 제조업·생산직 등 일부 직군에 한해 최대 근무 시간을 주 60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직장인 2명 중 1명은 '주 48시간'을 적정 근로 시간으로 생각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9월4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8.3%가 1주일 최대 근로 시간으로 48시간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이 설문에서 주당 최대 근로 시간 한도의 가장 낮은 상한은 '주 48시간'이었다.

현행 '주 52시간'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29.6%로 집계됐다.

직장인 10명 중 약 8명(77.9%)은 '근로 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셈이다.

직업별로 보면, ▲생산직 48.5% ▲사무직 47.6% ▲서비스직 47%가 1주일 최대 근로 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낮춰야 한다고 답했다.

업종별로 보면 ▲교육서비스업 54.2%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50.5% ▲제조업 43.4% ▲도소매업 41.5% ▲건설업 41.8% ▲숙박 및 음식점업 39.2% ▲기타 51.6%가 '주 48시간'을 적정 근로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용노동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근로 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비판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 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75.3%와 사업주 74.7%가 주당 최대 근로 시간 한도를 '주 60시간 이내'가 적절하다고 선택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응답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상한의 선택지가 '주 60시간 이내'였기 때문"이라며 "직장인들은 고를 수 있는 선택지 중 가장 짧은 시간을 일관되게 고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48시간은 유럽연합(EU) 대부분 국가가 그러하고 국제노동기구(ILO)도 명확히 밝힌 주당 근로 시간 상한의 국제적인 기준이기도 하다"며 "이제 대한민국도 글로벌 스탠다드인 주 48시간으로 주당 근로 시간 상한을 줄여야 할 때가 됐다"고 전했다. 오유나기자



'수능 끝, 이제는 논술'

19일 오전 서울 중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202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 고사를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하지정맥류 수술 후 신경손상 손배소 '의사 책임 70%' 판결

의사가 하지정맥류 수술을 잘못해 환자에게 감각 저하와 운동 장애를 일으켰다면, 70%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3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A씨가 병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다리가 아프고 쥐가 나는 증상으로 B씨의 병원을 찾았다.

A씨는 같은달 22일 병원에서 우측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직후 오른쪽 발목이 올라가지 않고 발등 부위에 감각이 저하됐다.

A씨는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21년 1월14일 대학 병원에서 총비골(온종아리) 신경 손상 판정을 받았다.

A씨는 B씨의 수술·진료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장은 "A씨는 수술 이후부터 오른쪽 다리의 운동 장애와 감각 저하를 호소하고 있다. 진료기록·신체감정의들도 온종아리 신경 손상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A씨에게 수술 전 신경 손상 징후가 없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B씨의 수술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하지정맥류 수술 뒤 온종아리 손상이 발생하는 사례가 드문 점, 총비골신경의 분포·위치는 사람마다 매우 다양한 변이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B씨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B씨는 위자료 1000만원을 포함해 A씨에게 28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 했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